

부산지방법원 2022. 3. 31 선고 2020가단2331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천 담당변호사 장승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성현정

변 론 종 결 2022. 3. 17.

판 결 선 고 2022. 3. 3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주위적으로, ①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. 15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②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연제등기소 2020. 1. 16. 접수 제41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2. 예비적으로,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연제등기소 2020. 1. 16. 접수

제41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피보전채권

(1) 원고는 C, D을 상대로 계금 청구소송(부산지방법원 94가단5539)을 제기하여 1995. 1. 26. 위 법원으로부터 ‘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994. 2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1995. 2. 26.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피보전채권’이라 한다).

(2) 원고는 2011. 7. 6. 이 사건 피보전채권 원리금 45,054,408원[원금 1,800만원 + 지연손해금 32,017,808원 중 기 변제금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7,017,808원]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E(주), F(주), G(주)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압류·추심명령(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6784, 이하 ‘이 사건 압류·추심명령’이라 한다)을 받은 후, 2011. 9. 15. E으로부터 1,500만원을 지급받았다.

나. C의 근저당권 설정행위

(1) C의 부동산 취득

C는 2014. 12. 1.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,000만원에 매수한 후, 2015. 3. 2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
(2) 근저당권설정

C는 2020. 1. 15.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채권최고액 6,000만원, 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’라고 한다)을 체결한 후, 2020. 1. 16.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

주었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제1, 2호증, 을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의 전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(1)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(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95103 판결).

(2) 위 인정사실에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C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만 계산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저감시킨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일응 C에게 위 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피고는 ‘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’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판결이 1995. 2. 26.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,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. 2. 13.에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.

(2)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

(가) 이에 대하여 원고는 ‘원고는 2020. 1. 9. C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, C가 이를 수령하지 않아서, 2020. 1. 13. C를 직접 찾아가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건네주면 채무이행을 독촉을 하였고, 그 후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20. 6. 26. C를

상대로 채권압류·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,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’라는 취지로 재항변하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원고의 위 최고 이전인 2005. 2. 26.에 이미 시효소멸한 상태였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(나) 또한 원고는 ‘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주채무자 D에 대한 보증채무인데, 주채무자인 D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압류·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, 보증채무인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 상태이다’라고 재항변하는바, 갑제2,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D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,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(오히려, 을제6호증, 갑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주채무이고, D이 위 채무를 보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).

다.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(1) 청구원인

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와 피고의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이므로, 원고는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위 가장행위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(2) 판단

갑제3, 4호증, 갑제7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도균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[집합건물] 부산광역시 연제구 H 제2층 1호. 끝.

